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산업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김윤덕 의원 발의, '21. 4. 2) 의미
 - 현행 법령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적 결단

정책동향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발주자 직접납부방식 도입과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행위 근절 필요
-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
 -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더욱 확산될 듯

시장동향

-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하도급 건설사 공사비 부담 심각
 -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산업동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김운덕 의원 발의, '21. 4. 2) 의미

- 현행 법령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적 결단 -

홍성진 책임연구원
(hongsj@ricon.re.kr)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위규범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은 위임 입법의 한계 및 비례의 원칙 위배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혁신구조를 위하여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생산자의 공정 경쟁 유도 및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종합·전문·상호시장 진출 허용
-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그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전문·상호시장 진출을 의무화(세부기준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건설산업기본법의 원칙과 예외

원칙	예외	성격
해당 건설업종 등록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건설 업종
	•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부대 공사
	•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발주자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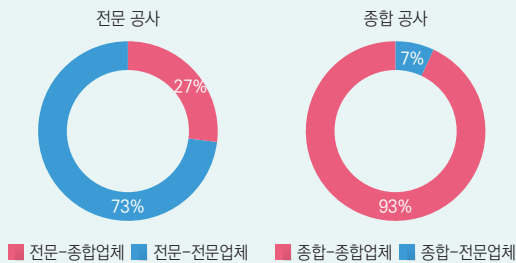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예외 없는 종합·전문의 상호진출 의무화는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조정·관리가 불필요한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초래하여 생산구조 혁신취지 퇴색

- '21년 1분기(3월 기준),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나라장터)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27.4%),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7.2%)
-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시장 점유율은 건수 대비 27%, 금액 대비 22% 수준으로 상대 업역 수주가 활발하나, 전문건설업의 진출은 건수 대비 7%, 금액 대비 5% 수준에 불과(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종합·전문의 상호시장 진출현황('21.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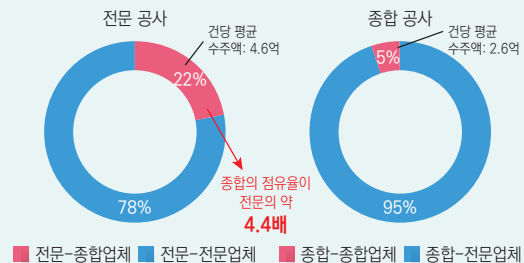
구분	교차발주		수주		평균수주액 (건당)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문공사 (종합건설업체 수주)	2,123	7,295억원	582 (27.4%)	1,605억원 (22.0%)	2.7억원	■ 토건(288건), 토목(195건) ■ 건축(52건), 조경(47건)
종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수주)	1,704	1조280억원	123 (7.2%)	511억원 (4.9%)	4.1억원	-

상호시장 진출 현황(건수)



* 자료: 나라장터 (2021.03.31. 기준)

상호시장 진출 현황(금액)



* 자료: 나라장터 (2021.03.31.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위험성을 보완하고,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촉진에 필수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에 필요한 타당한 입법

-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 등록기준 면제, '23년까지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과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방안 마련을 통해 생산구조 혁신의 입법적 완성도 제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임 범위 내 종합·전문직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발주자 판단 존중 및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위험성 제거 필요

현행	개정안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영 제19조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 2억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에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규정의 유예기간 탄력 설정과 '공공공사의 대기업 공사금액 도급하한제' 활용을 통해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방안 강구도 필요



정책동향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발주자 직접납부방식 도입과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행위 근절 필요 -

박광배 연구위원
(jwjb2021@ricon.re.kr)

1. 건설업의 사회보험 현황

-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발전과정은 복지 증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공적 보험으로 운영
 -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에 대한 대비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 및 재활을 지원
- ◆ 사회보험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보험의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가입자 확대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
 - 각 사회보험의 변천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고, 가입자 수의 증가는 보험을 운영하는 재원의 안정에 기여 가능
- ◆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의 생산방식에서 기인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특례의 영역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인데, 점차 특례의 축소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추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8년 8월 1일 이전에는 건설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 되기 위한 요건은 월 20일 이상 근로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로로 변경
 - 건설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고령과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
 - 실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

◆ **건설근로자를 사회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성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건설업의 생산방식과 건설근로자의 근로형태,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중후반이며, 임시·일용직 고용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이 취약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위험의 대비는 건설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자기부담을 통해서 스스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가입자의 확대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인 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로서의 타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노무의 제공 형태가 현장의 다른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고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여지
-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방향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 운영에서 건설생산의 특성과 건설근로자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업무의 가중에 따른 건설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재
-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가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 즉 현재의 소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건설근로자가 다수이며, 이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한 비용 각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근로소득이 감소되는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이런 상황은 신고 누락과 보험료 미납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부당한 과태료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제도가 기본적으로 일정한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제조업을 상정하고 설계되었기 때문
- 이외에도 가격경쟁에 기반하고 있는 입찰경쟁,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생산구조에서 보험료의 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

2. 평가 및 전망

◆ **사회보험 신고 및 납부를 일원화하여 건설사업주의 관련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도입되어 시행될 필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요건 완화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업무를 대행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와 업무처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체계의 정비 필요

◆ **특히, 발주자 직접납부방식에 대한 도입 검토가 시급**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미숙지와 인력의 부족, 그리고 하도급 입찰경쟁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 발생
- 발주자 직접납부제도의 도입 시 도급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가능

◆ **근로자의 원천징수 거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필요**

정책동향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 -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더욱 확산될 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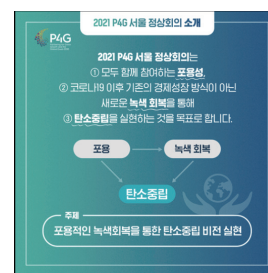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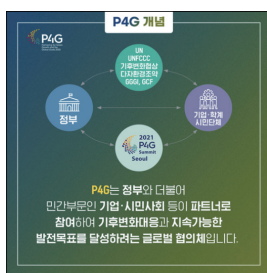
유일한 연구위원
(ihyu71@ricon.re.kr)

1.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 '21년 5월 30일~31일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정상급 68명이 참석한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 정부는 정책방향과 초기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은 투자를 통한 실제적인 행동을 하며, 시민사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
- P4G는 이러한 글로벌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
- P4G의 P는 파트너링(Partnering)을 뜻하므로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선진·개도국 모두가, 그리고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강조
- P4G는 '17년 9월 출범하여 '18년 10월 제1차 P4G 정상회의(덴마크 코펜하겐) 개최 후 '19년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미국 뉴욕)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21년 5월 30일~31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회의를 개최
- 이번 서울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45개 국가와 EU, 21개 국제기구에서 총 68명이 참석하는 등 위상 및 관심 증폭

P4G의 개념, 목적 및 2021 서울 정상회의 개요



자료: 2021 P4G Seoul Summit

◆ 서울 개최의 의미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중점 논의사항

- P4G는 '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였던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5개 목표(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목표인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
- 특히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로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제를 포함한 배경문서를 준비
 -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배경문서는 △포스트 COVID-19 녹색회복 관련 정책동향 분석 △녹색회복 확산의 제약요인 도출 △민관협력을 통한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 모색 △P4G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방안을 심층 분석하여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민관연대 형성의 중요성을 설명
 - 또한 한국 개최의 의미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간 리딩 역할을 강조하였고,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디딤돌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격상(상향 조정)과 향후 10년 간의 이정표 설정을 위해 포용성, 녹색회복, 탄소중립 주제를 중점 논의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5월 31일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지원과 파리협정 이행 등 강한 의지를 표명

- 한국 정상이 주재한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각 나라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국제사회의 행동 제시

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확산

◆ '서울 선언문'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갖는 의미

- 서울 선언문으로 전 세계 기후위기 극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건설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서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정책 및 사업의 확산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글로벌 녹색건설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

◆ 건설산업은 전환적 투자,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녹색산업 분야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확산,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에너지절약형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마련 등에서의 정책적 선도 필요
- 반면 기업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등 생산방식과 현장(site)의 환경혁신 필요

◆ 한국 주도의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기업의 ESG 실천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중소·전문건설기업들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체계 구축이 시급

시장동향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하도급 건설사 공사비 부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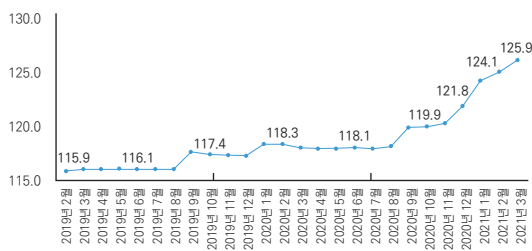
-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 -

홍성호 선임연구원
(hsh3824@ricon.re.kr)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균형으로 건설현장 공사비 상승과 공기지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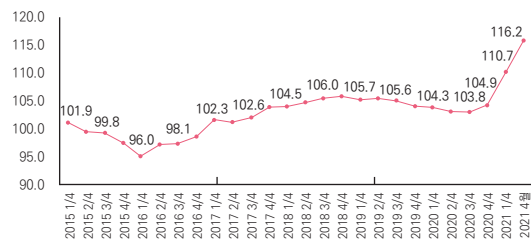
- '21년 4월 건설용 중간재 공급물가지수는 116.2(P)로 전년 동월 대비 11.9%p 상승하고, 건설공사비지수도 '21년 3월 125.9(P)로 유가·자재단가의 증가로 인해 7.8%p 상승

건설용 중간재 공급물가지수 동향



자료: 통계청

건설공사비지수 동향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6개 주요자재 단가가 금년 2월 대비 15% 이상 증가 또는 지속적 상승세를 보여 하도급 건설사 부담 가중

-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하는 건설 주요자재 142개 항목 중 금년 2월 대비 단가가 15% 이상 증가한 항목은 13개이며, 아직까지 상승률이 15% 이내이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항목도 13개(계약금액 조정대상)

금년 2월 대비 자재단가 15% 이상 상승한 주요 자재 (계속)

품종	품목	규격	단위	21년 5월 가격(원)	21년 2월 가격(원)	상승률 (%)
철강재	보통철근	SD300D10mm	M/T	915,000	765,000	19.6%
	고장력철근	SD400D10mm	M/T	920,000	770,000	19.5%
	열연박판	SS2751.4≤T≤1.6mm(914×1,829)	kg	1,160	980	18.4%
	열연후판	SS27512.0mm≤T≤20.0mm(2,438×6029)	kg	1,130	840	34.5%
	구조용탄소강관(백관)	76.3×3.2mm	m	9,790	7,550	29.7%

금년 2월 대비 자재단가 15% 이상 상승한 주요 자재

품종	품목	규격	단위	21년 5월 가격(원)	21년 2월 가격(원)	상승률 (%)
비철제품	동봉	두께6.1~10mm	kg	15,400	12,820	20.1%
	알루미늄괴	V-INGOT(중국제)	Ton	3,095,000	2,628,000	17.8%
	주석(석괴)	99.99%이상	kg	39,000	28,800	35.4%
토목자재	스트레이트아스팔트	AP-3침입도80~100mm	kg	620	500	24.0%
배관설비재	동파이프	L-TYPE15A15.88mm0.426kg/m	m	5,480	4,730	15.9%
전기통신 및 소방설비	HIV전선	단선2.5SQ	m	316	240	31.7%
	F-CV전선	1C2.5SQ(0.6/1KV)	m	608	444	36.9%
	강제전선관	KSC8401,16mm,21.0×2.30mm,1.06kg/m	m	2,750	2,290	20.1%

금년 2월 대비 자재단가 10% 이상 상승한 주요 자재

품종	품목	규격	단위	21년 5월 가격(원)	21년 2월 가격(원)	상승률 (%)
철강재	구조용H형강	100×100×6×8mm(압연,중형)	M/T	1,010,000	890,000	13.5%
	냉연강판	CR(SCP1)1.0mm≤T<1.75mm	kg	1,170	1,050	11.4%
	아연도강판	T≤0.20mm(914×1,829)	매	4,520	4,000	13.0%
	석도강판	0.25×5.6/5.6(50×50)	M/T	1,941,000	1,751,000	10.9%
비철제품	동선	7.0~12.9mm(경질AA급)	kg	15,100	13,290	13.6%
	황동판(2종)	0.5×400×1,200mm	kg	11,100	9,830	12.9%
	망간	99.98%이상	kg	3,400	3,000	13.3%
	알루미늄판	0.4mm400×1,200mm(A1235)	kg	4,740	4,220	12.3%
배관설비재	배관용탄소강관(SPP)	20mm반제품KS(흑관)	m	1,950	1,770	10.2%
	배관용탄소강관(SPP)	20mm반제품KS(백관)	m	2,640	2,390	10.5%
보온보냉재	미네랄울파이프카바	40mm,1½",40T	m	5,104	4,603	10.9%
전기통신 및 소방설비	CPEV전화케이블	0.5mm,200P	m	15,103	13,730	10.0%
	에나멜동선	PEW/UEW0.14mm	kg	15,556	13,834	12.4%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원도급사·하도급사는 공사비를 보전 받기 힘든 상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지수)조정률에 계약금액 조정과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단품슬라이딩)으로 규정
 - 품목(지수)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 조정

- 단품슬라이딩: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 생산자물가지수에는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농림수산물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상황
- 단품슬라이딩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중 단가가 3개월 이내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
- 원도급사의 단품슬라이딩보다 품목(지수)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유리하다는 인식과 두 가지 조정방법 중복 시 공제, 신청조건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단품슬라이딩 요청에 소극적

◆ 하도급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품슬라이딩 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

- 단품슬라이딩 요건인 가격 변동률 기준을 현행 15%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그 대상도 현행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서 확대
- 원도급사 승인 없이 하도급 건설사가 단품슬라이딩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허용

◆ 최신 자재단가가 반영된 예정가격 산정과 원도급사·하도급사의 공사비 변동을 고려한 입찰 참가 필요

- 3개월 이전의 공사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사의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신 자재단가 반영
- 원도급사·하도급사도 자재가격 등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드시 고려한 견적을 통해 입찰가격 작성

